

## (사)한국조경협회 정관

이사회 의결		1980.06.21
개 정		1985.02.02
개 정		1993.03.13
개 정		1995.03.25
개 정		1996.03.23
개 정		1997.02.15
개 정		1998.03.14
개 정		1999.03.20
개 정		2004.03.20
개 정		2005.04.01
개 정		2006.04.03
개 정		2008.04.04
개 정		2009.04.03
개 정		2009.11.03
개 정		2011.06.27
개 정		2013.05.10
개 정		2015.03.25
개 정		2018.05.28
개 정		2023.02.27

###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협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조경협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n Society of Landscape Architects, 약칭 KSLA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자연환경 및 생태계보전, 건설 및 조경 분야에 관한 지식과 기술을 통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국토개발과 사회공익에 이바지함으로써 조경산업과 문화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① 본회의 주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에 둔다.

②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에 지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주무부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지회의 명칭,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내·외의 자연생태환경 조성·복원 및 조경기술의 정보교환
2. 건설과 조경에 관련된 강연회, 전시회 및 견학회 등 조경관련 행사
3. 조경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련된 사업
4. 국제기구 및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협력과 교류
5. 조경공간의 품질, 안전 및 조경시공기술의 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및 감정
6. 조경실무에 관한 연구 및 기술, 조사자료 등 각종 도서 발간
7. 조경을 통한 사회공헌 활동
8. 조경 및 관련분야에 관한 자문 및 대정부 건의
9. 조경 관련 정책, 법령 연구 및 제도 개선
10. 조경연구소 설치 운영
11. 조경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12. 회원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13.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제규정) 본회는 이 정관으로 정하는 외에 업무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 ① 본회의 정회원은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본회에 입회한 자로 한다.

1. 개인회원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조경기술사,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을 구비한 자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조경분야에서 종사하는 자 또는 기업회원의 구성원으로 등록된 자

2. 기업회원 : 조경사업에 종사하고,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기업

② 본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회원 외에 다음 각 호의 회원을 둘 수 있다.

1. 준회원 : 조경관련 대학 또는 대학원의 재학생 또는 이에 준하는 자

2. 명예회원 :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조경문화 발전과 본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

3. 후원회원 :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사업을 후원하는 개인, 기업 또는 단체

제7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다만, 제2호의 권리와 제3호 중 표결에 관한 권리는 정회원 중 개인회원에 한한다.

1. 본회의 제5조의 사업에 참여하고 본회 활동으로 인한 제권익 및 혜택을 받을 권리

2. 본회의 임원 및 소속 지회의 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는 권리와 선출할 권리

3. 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권리

4. 본회가 보유하고 있는 조경분야의 관련자료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제8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다만, 제4호의 의무는 정회원 및 준회원에 한한다.

1. 정관 및 제 규정 준수의 의무

2. 총회 및 이사회 결의사항의 이행 의무

3. 본회의 명예 및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보전하고 회원간 단합, 친목할 의무

4. 회비 또는 기타 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할 의무

5. 본회의 각종 사업, 행사 및 활동에 적극 참여할 의무

② 회원은 제1항의 의무사항 외에 대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본회의 직위 또는 본회가 부여한 명칭의 사용

2. 본회의 의결 또는 정책방향에 따른 요구사항이나 결정사항 등의 성실히 이행

3. 활동사항에 대한 결과보고

제9조(회원의 탈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자 또는 기업 및 단체는 소정의 탈퇴원을 본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원자격의 상실)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사망

2. 제명

3. 탈퇴

제11조(회원의 징계 및 제명)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을 징계 또는 제명 할 수 있다.

1.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본회의 사업을 방해한 때

### 제3장 임 원

제12조(임원)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 1인
2. 회장: 1인
3. 부회장: 15인 이내(당연직 포함)
4. 상임이사, 이사: 정회원의 20% 이내
5. 감사: 2인

제13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 모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5조(임원의 보충방법) 임원의 임기 중 결원(탈퇴/징계/유고 등)이 생길 때는 제14조의 절차에 따라 보선한다.

제16조(업무계속성) 본회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 총회 소집 및 회무는 명예회장이 주재한다.

제17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또는 궐위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수석부회장의 부재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대행한다.

③ 상임이사과 이사는 이사회 구성원으로 이사회를 통하여 제28조의 회무에 관하여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감사규정에 의거 본회의 업무 및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를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8조(고문, 자문위원, 기술위원) ① 고문은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② 회장은 본회에 공헌이 있는 자를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③ 회장은 본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자문위원, 기술위원 약간 명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

### 제4장 총 회

제19조(총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본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제20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 재적회원 1/3이상의 연명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최소한 7일전에 그 회의 목적, 일시, 장소 등을 표시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총회의 의결사항) ①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의결한다.

1. 정관의 개정과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설치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관련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정회원의 입회비 및 임원, 정회원, 준회원의 연회비 결정에 관한 사항
  7. 본회의 해산 등 중요한 사항
  8. 회장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부의한 사항
- ② 총회 미성원시는 이사회 결정사항의 결과보고로 대신한다.

제22조(총회의 성립 및 의결) 총회의 성립은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루어지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제21조 제1항 제1호 정관 개정의 건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 및 제7호 본회 해산의 건은 재적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23조(총회의 의결제척사항) ① 본회와 회장 또는 회원 간의 법률상의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 ② 본회의 사업 또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본 협회와 자신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 ③ 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것인 경우

- 제24조(총회 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 ② 의사록에는 회의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제5장 이사회

- 제25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본회는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 ② 이사회는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
  - ③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이사(명예회장, 부회장, 상임이사, 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27조(이사회의 기능 및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 소집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의안
3. 총회의 위임사항
4.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
5. 업무의 집행
6. 사업계획의 운영
7. 예산, 결산서 작성
8. 지회 조직의 창립, 승인, 운영, 해소 및 취소에 관한 사항
9. 회원의 징계 및 제명
10. 정부 또는 유관기관 및 단체에 대한 주요 건의사항
11.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2. 기타 회장이 필요하여 부의한 사항

② 이사회는 총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결과는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단, 총회의 성원 미달 시에는 결과보고로 갈음한다.

제28조(이사회의 성립 및 의결) ① 이사회의 성립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이루어지며,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단,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는 출석이사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② 이사는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제29조(이사회의 의결제척사항) ① 본회의 사업 또는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협회와 자신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② 이사회의 의결사항 또는 총회에 부의할 사항으로서 그것이 자신에 관한 것인 경우

제30조(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 제6장 위원회

제31조(자문위원회) 본회의 사업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2조(각종 위원회) 본회의 업무집행 또는 특정분야의 사업 활동을 위하여 이사회는 각종 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을 선출하며, 목적의 소멸에 따라 이를 폐지할 수 있다.

## 제7장 재산 및 회계

제33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 한다.

1. 입회비
2. 정회원 회비
3. 준회원 회비
4. 특별회비
5. 사업수익금
6. 기타 수입금

② 회원의 입회비 및 회비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③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확정하지 못했을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필요경비를 지출 할 수 있다.

제34조(회계) 본회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특별회계는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한다.

제35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예산 및 결산) ① 본회의 회장은 매 회계연도 경과 후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된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재산목록
2. 사업실적
3. 잉여금증서
4. 기타 예산 및 결산 승인에 필요한 서류

② 총회에 제출하는 보고서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37조(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등의 보고)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에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38조(임원의 보수) 본회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회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통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본회 회계에 대한 사항을 년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 제8장 사 무 부 서

제40조(사무국) ① 본회는 회장의 지시를 받아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회장단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9장 포 상

제41조(포상) 본회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 기업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1. 대외적으로 조경계 및 본회를 빛낸 회원

2. 조경계 및 본회 발전에 기여한 회원

3. 조경계 및 본회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외부 인사, 기업 또는 단체

## 제10장 보 칙

제42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출석이사 2/3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4조(해산후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에는 잔여재산은 주무부처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비영리 단체에 기증한다.

제45조(서면의결)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서면을 거쳐 의결 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연임에 관한 특례) 개정규정 제13조 중 회장의 연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개정을 시행한 당해 회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